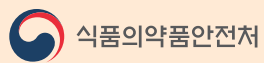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청렴 세상
Quality of Integrity
깨끗하고 바른 당신! 세상을 밝힙니다.

www.mfd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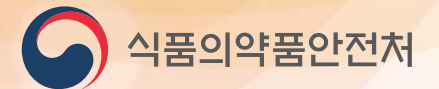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관리기획단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043-719-6057 / Fax. 043-719-6050

주종별 표시 예시

2016



본 책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5호(2016.6.13))를 반영하여 주종별로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간추린 것으로 주류 제조업체에서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mfds.go.kr)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등의 표시기준」)

Contents

주류표시의 일반사항	4
표시방법	5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6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6
표시 장소 및 도안	7
제품명	8
원재료명 및 함량	9
탁주	10
약주	11
청주	12
맥주	13
과실주	14
소주	15
위스키	16
브랜디	17
일반증류주	18
리큐르	19
기타주류	20
주정	21
부록	22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 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000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l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탁주, 약주, 소주 등 * 살균 탁·약주는 '살균탁주', '살균약주'로 표시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1) 유통기한(맥주, 탁주, 약주) 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2) 품질유지기한(맥주) 00년 00월 00일 또는 제조일로부터 00일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 냉장보관·유통 제품은 「냉장보관」 함께 표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000, 000, 복숭아농축액, 국,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 * 복숭아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g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합성수지제·고무제의 용기·포장에 재질 표시 * 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실리콘고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활자크기 예외 규정

-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14포인트 이상)
예시) 쌀막걸리(쌀 00%)
-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12포인트 이상)
- 정보표시면 면적 부족으로 10포인트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주요사항]

- (최소 판매단위별 표시) 제품의 용기·포장에 한글로 표시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 시 별도 표지판 가능
- (잉크 등 사용)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 사용
 - 포장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 사용 가능
- (주표시면·정보표시면 구분)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
 - 정보표시면은 표 또는 단락 등으로 구분(7p, [그림2] 참조)
- (세트포장 표시) 외포장지에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
 - 유통기한은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

[기타사항]

- 한자나 외국어 혼용·병기 가능(한글표시 활자보다 작거나 같게)
 - 수입식품,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 가능
- 재사용 유리병은 타 제조업소 표시 있어도 사용 가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으로 같은 식품유형(유사 품목)에 한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스티커 사용 가능
-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함께 표시 가능
- 수출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탱크로리 제품은 차 내부에 비치 가능
- 제조·가공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은 일부 표시 가능
 - 제품명, 제조일(유통기한), 보관방법(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1. 지방식약청에 품목보고한 명칭(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
2.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 *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 그 함량과 고형분의 함량(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 예시1) 복분자 사용시: △△복분자막걸리(복분자 00%)
 - 예시2) 복분자추출물 사용시: △△복분자막걸리(복분자추출물 00%(고형분 함량 00%))
3. 과실 등 통칭 명칭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생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
4. 합성향료만을 사용하고 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 원재료명 다음에 '향' 자 사용 및 '합성OO향 첨가' 표시
 - * 예시) 딸기향 리큐르(합성딸기향 첨가)
5.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 가능

Tip

1.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2. 지리적 표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 원료 표시]

1.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표시(물 포함 많이 사용한 순서로)
 - * 중량비율 2% 미만인 경우 상기 순서 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표시 가능
2. 성상이 변한 원재료는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
 - * 예시) 포도농축액, 포도추출액, 포도발효액 등
3.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
 - *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 표시
 - * 중량비율 5% 미만과 복합원재료 안의 복합원재료는 식품유형만 표시 가능
 - * 주정 및 증류주(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 가능
4. 주표시면 면적이 30cm² 이하인 경우, 물 제외 5가지만 표시 가능
5. 천연향료는 천연향료(또는 세부명칭), 합성향료는 합성향료와 세부명칭 표시
 - * 예시) 천연딸기향: 천연향료 또는 딸기향, 합성딸기향: 합성향료(딸기향)
6. 추출물(또는 농축액)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 추출물(농축액) 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 예시) 가시오가피추출물 10%(배합 함량 2.5%), 감초추출분말 2%(고형분 함량 98%)

Tip

1. 원재료 함량 표시를 위한 계산(예시)

원재료구분	합	쌀	물	국	효모	아스파탐
원재료, kg	629.13	100	528	1	0.1	0.03
비율, %	100	15.9	83.9	0.16	0.016	0.005

⇒ 물 83.9%, 쌀 15.9%, 국 0.16%, 효모 0.016%, 아스파탐 0.005%

2. 원산지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첨가물 원료 표시]

1. 명칭과 용도 함께 표시 [부록_표1]
 - * 예시)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
2. 명칭 또는 간략명 표시 [부록_표2]
3. 명칭이나 간략명 또는 주용도 표시 [부록_표3]
4. 혼합제제류는 구체적 명칭과 구성 식품첨가물 모두 표시
 - * 예시)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5. 식품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제거되는 경우 표시 생략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1) △△△ 쌀 탁주(쌀 00%)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2) △△△ 막걸리 * 전분질 원료가 단일 원료인 경우 전분질 원료에 대해 100% 표시 가능 (예: 전분질원료로 쌀 100% 사용)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ℓ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탁주 * 살균제품은 '살균탁주' 표시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포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 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유통기한	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 냉장보관·유통 제품은 「냉장보관」 함께 표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쌀 00%, 밀가루, 물엿, 사카린나트륨(감미료), 국, 효모, 아스파 탐(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 대추추출액 [밀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	10 이상
	용기·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1) △△△ 쌀 약주(쌀 00%)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2) △△△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ℓ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약주 * 살균제품은 '살균약주' 표시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포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 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유통기한	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 냉장보관·유통 제품은 「냉장보관」 함께 표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쌀 00%, 밀가루, 물엿,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 대추추출액, 구기자 [밀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	10 이상
	용기·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10 청주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1) △△△ 쌀 청주(쌀 00%)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2) △△△ * 순 용어 표시 가능(발효시켜 얻은 에탄올 모두가 백미에서 기인한 경우)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ℓ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청주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주,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쌀 00%, 밀가루, 물엿,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 대추추출액, 구기자 밀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 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일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11 맥주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담색맥주, 흑맥주 표시 가능(색상에 따라), 생맥주 표시 가능(비열처리 시) * 라이트 용어 표시 가능(30kcal/100ml 이하인 경우)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보리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보리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ℓ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맥주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주,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1) 유통기한 2) 품질유지기한	1) 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2) 00년 00월 00일 또는 제조일로부터 00일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 냉장보관·유통 제품은 「냉장보관」 함께 표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맥아, 전분, 효모, 호프 밀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 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일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1) △△△ 포도주(포도추출물 00%(고형분 함량 00%)) * 제품명에 포도 등 원료 표기한 경우, 포도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2) △△△ * 포도주, 사과주, 딸기주 등 구분 표시 가능(원재료 종류에 따라) * 적포도주, 백포도주, 홍포도주 등 표시 가능(포도주 색상에 따라) * 포도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포도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ℓ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과실주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 년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포도, 설탕, 효모, 아황산나트륨(산화방지제), 소브산(보존료), 포도농축액 아황산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탄산가스 표시 의무(탄산가스 함유 시) * 제품명에 과실 등 통칭 명칭 사용 시,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9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	10 이상
	용기·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00ℓ 또는 00mℓ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소주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00도 00시 00읍 00로 00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 년월일	00년 00월 00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주정, 효소처리스테비아, 액상과당, 사카린나트륨(감미료) *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같은 소주를 제조·가공 시, 같은 원재료명 표시 가능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소주원액으로 표시 가능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표시해야 함)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00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00%	10 이상
	용기·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000000000000(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할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원료주 조성·산지에 따라 특정 고유명칭 표시 가능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품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OOℓ 또는 OO㎖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위스키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OO도 OO시 OO읍 OO로 OO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포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OO년 OO월 OO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보리, 효소, 효모, 주정 * 원료주 함량 비율 표시 의무(원료주를 사용한 경우)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위스키알액으로 표시 가능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표시해야 함)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OO농축액)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OO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OO%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OOOOOOOOOOOO(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할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원료주 조성·산지에 따라 특정 고유명칭 표시 가능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품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OOℓ 또는 OO㎖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브랜드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OO도 OO시 OO읍 OO로 OO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포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OO년 OO월 OO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포도, 포도즙, 효소, 효모, 주정 * 원료주 함량 비율 표시 의무(원료주를 사용한 경우)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브랜드알액으로 표시 가능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표시해야 함)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OO농축액)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OO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OO%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OOOOOOOOOOOO(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고량주, 럼, 보드카, 진 등 특정 고유명칭 표시 가능(원료주 조성·산지에 따라)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흡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OOℓ 또는 OO㎖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일반증류주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OO도 OO시 OO읍 OO로 OO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OO년 OO월 OO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주정, 쌀, 보리, 밀, 옥수수, 사탕수수, 국, 효모 * 원료주 함량 비율 표시 의무(원료주를 사용한 경우)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000원액으로 표시 가능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표시해야 함)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OO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OO%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OOOOOOOOOOOO(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 특정 고유명칭 표시 가능(원료주 조성·산지에 따라)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흡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OOℓ 또는 OO㎖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리큐르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OO도 OO시 OO읍 OO로 OO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OO년 OO월 OO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주정, 인삼, 더덕, 더덕농축액 * 제품명에 과실 등 통칭 명칭 사용 시,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9p 참조)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000원액으로 표시 가능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표시해야 함)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00농축액)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OO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OO%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OOOOOOOOOOOO(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OOℓ 또는 OO㎖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기타주류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OO도 OO시 OO읍 OO로 OO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OO년 OO월 OO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주정, 인삼, 더덕, 더덕농축액, 설탕 OO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6p 참조) * 제품명에 과실 등 통칭 명칭 사용 시,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6p 참조)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OO농축액)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OO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OO%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OOOOOOOOOOOO(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예 1) 10℃ 이하 냉장보관 예 2)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2) 참조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제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위치	구분	표시 예시	활자크기 (일부예외)
주표시면	제품명	△△△ * 제품명에 쌀 등 원료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4포인트)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에는 고형분(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 * 쌀 등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기한 경우, 쌀 등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12포인트)	10 이상
	내용량	OOℓ 또는 OO㎖	10 이상
정보 표시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7p [그림2] 참조)	식품유형	주정	10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주조, OO도 OO시 OO읍 OO로 OO * 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 표시 가능	10 이상
	제조년월일	OO년 OO월 OO일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로 대신 표시 가능 * 별도 표기 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0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물, 타피오카, 현미, 밀, 고구마, 효모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 -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OO원액으로 표시 가능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표시해야 함) * 물 포함 모든 원료를 사용순으로 표시 * 원래의 성상이 변한 원재료 사용 시 공정명 및 성상 함께 표시(예: OO농축액)	10 이상
	성분명 및 함량	OOg *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명칭과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 표시	10 이상
	에탄올 함량	OO%	10 이상
	용기·포장 재질	스테인레스스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마크 표시하면 생략 가능	10 이상
	품목보고 번호	OOOOOOOOOOOO(12~13자리)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부여되는 번호	10 이상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10 이상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3) 기타(고카페인 등 해당 경우에 한함, 6p 참조)	10 이상

※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 가능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인 경우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보관·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 가능

※ 기타 표시 관련법령

-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 과음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 상표, 용도구분 등 표시: 「주세법」 (기획재정부, 국제청)
- 유전자변형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부 록 Appendix

01

식품첨가물 표시

[표1_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미료
식용색소녹색 제3호 식용색소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3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 제2호 식용색소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5호 식용색소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삼이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수용성안나토 카르민 β-카로틴 동클로로필린칼륨 β-아포-8'-카로티날	착색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보존료

[표2_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폴식자산프로필 에리쓰르빈산 에리쓰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화방지제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표백용은 표백제로, 보존용은 보존료로, 산화방 지제는 산화방지제로 한다.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용은 살균제로, 표백용은 표백제로 한다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발색용은 발색제로, 보존용은 보존료로 한다
카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향미증진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가티검	
감색소	
감초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결정섬유소
고량색소	
과산화벤조일(희석)	
과황산암모늄	
구아검	
국	
규산마그네슘	규산Mg
규산칼슘	규산Ca
규소수지	
글루코만난	
글루코사민	
글리세린	
금박	
김색소	
나타마이신	
니신	
덱스트란	
라우린산	
락색소	
락티톨	
로진	
로커스트콩검	
루틴	
D-리보오스	리보오스
마리골드색소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메틸셀룰로오스	
메틸알콜	
메틸에틸셀룰로오스	
물식자산	
무궁화색소	
미리스탄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	미소섬유상섬유소
백단향색소	
베리류색소	
벤토나이트	
변성전분	
변성호프추출물	
붕산화추출물	
분말셀룰로오스	분말섬유소
비트레드	
사일리움씨드검	
사프란색소	
산소	
잔탄검	
D-소르비톨	소르비톨
D-소르비톨액	소르비톨액
수소	
스테비올배당체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스테아린산	
스피룰리나색소	
시아너트색소	
시클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실리코알루미늄산나트륨	실리코알루미늄산Na
심황색소	
아라비노갈락탄	
아라비아검	
아산화질소	
아세톤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안나토색소	
알긴산나트륨	알긴산Na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알긴산K
알긴산칼슘	알긴산Ca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알긴산에스테르
알팔파추출색소	알팔파색소
양파색소	
에틸셀룰로오스	
염소	
염화칼륨	염화K
γ-오리자놀	오리자놀
오징어먹물색소	
옥시스테아린	
올레인산	
이산화규소	산화규소
이산화염소	
이산화탄소	
이소말트	
이소프로필알콜	
자몽종자추출물	
자일리톨	
자주색고구마색소	
자주색옥수수색소	
자주색참마색소	
적무색소	
적양배추색소	
젤란검	
중국	
지베렐린산	
질소	
차즈기색소	
차추출물	
차카테킨	
참깨유불검화물	참깨유추출물
초산에틸	
치자적색소	
치자청색소	
치자황색소	
카라멜색소	
카라야검	
카로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Na, 섬유소글리콘산나트륨, 섬유소글리콘산Na, CMC나트륨, CMC-Na, CMC, 셀룰로오스검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 섬유소글리콘산칼슘, 섬유소글리콘산Ca, CMC칼슘, CMC-Ca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카르복시메틸스타치Na, 카르복시메틸전분Na, 전분글리콘산나트륨, 전분글리콘 산Na
카카오색소	
카프릭산	
카프릴산	
커드란	
케르세틴	
코치닐추출색소	코치닐색소
클로로필	
D-자일로오스	자일로오스
키토산	
키틴	
타라검	
타마린드검	
타마린드색소	
탈지미강추출물	
토마토색소	
토마틴	
트라가칸스검	
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프리카색소
파피아색소	
팔미트산	
퍼셀레란	
페로시아화나트륨	페로시아화Na
페로시아화칼륨	페로시아화K
페로시아화칼슘	페로시아화Ca
페룰린산	
펙틴	
포도과즙색소	
포도과피색소	
포도종자추출물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글루탐산
폴리글리시톨시럽	폴리글루시톨
폴리덱스트로스	
ε-폴리리신	폴리리신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폴리아크릴산Na
피칸너트색소	
핵산	
홍국색소	
홍국황색소	
홍화적색소	
홍화황색소	
효소분해사과추출물	
효소처리스테비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알루론산	

[표3_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5'-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구아닐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구연산		산도조절제
구연산망간	구연산Mn	영양강화제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Na	산도조절제
구연산철	구연산Fe	영양강화제
구연산철암모늄		영양강화제
구연산칼륨	구연산K	산도조절제
구연산칼슘	구연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β-글루카나아제	글루카나아제	효소제
글루코노-δ-락톤		두부응고제, 산도조절제, 팽창제
글루코아밀라아제		효소제
글루코오산화효소		효소제
글루코오이성화효소		효소제
글루콘산		산도조절제
글루콘산나트륨	글루콘산Na	산도조절제, 유화제
글루콘산동	글루콘산Cu	영양강화제
글루콘산마그네슘	글루콘산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Mn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Zn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철	글루콘산Fe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칼륨	글루콘산K	산도조절제
글루콘산칼슘	글루콘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글루타미나아제		효소제
L-글루타민	글루타민	영양강화제
L-글루타민산	글루타민산	향미증진제
L-글루타민산암모늄	글루타민산암모늄	향미증진제
L-글루타민산칼륨	글루타민산칼륨, 글루타민산K	향미증진제
글리세로인산칼륨	글리세로인산K	영양강화제
글리세로인산칼슘	글리세로인산Ca	영양강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에스테르	유화제, 껌기초제
글리신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나린진		향미증진제
니코틴산		영양강화제
니코틴산아미드		영양강화제
담마검		피막제
덱스트라나아제		효소제
디벤조일티아민		영양강화제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영양강화제
디아스타아제		효소제
라우릴황산나트륨	라우릴황산Na	유화제
L-라이신	라이신	영양강화제
L-라이신염산염	라이신염산염	영양강화제
락타아제		효소제
락토페린농축물	락토페린	영양강화제
레시틴		유화제
렌넷카제인		유화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L-로이신	로이신	영양강화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Na,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리보뉴클레오티드Na	향미증진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칼슘	5'-리보뉴클레오티드Ca, 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리보뉴클레오티드Ca	향미증진제
리소짐		효소제
리파아제		효소제
리파아제/에스테라아제		효소제
말토게닉아밀라아제		효소제
말토트리오히드로라제	G3생성효소	효소제
메타인산나트륨	메타인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메타인산칼륨	메타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DL-메티오닌		영양강화제
L-메티오닌		영양강화제
몰리브덴산암모늄		영양강화제
몰포린지방산염	몰포린	피막제
뮤신		영양강화제
밀납		피막제
L-발린	발린	영양강화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리코시다아제	효소제
베타인		향미증진제
분말비타민A	비타민A, Vit.A	영양강화제
비오틴		영양강화제
비타민B12		영양강화제
비타민B1나프탈린-1,5-디설포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포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1로단산염	치아민로단산염, Vit.B1로단산염, Vit.B1티오시안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1염산염	치아민염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1철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1프탈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2	Vit. B2	영양강화제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Na, Vit. B2인산에스테르Na, 리보플라빈인산에스테르Na	영양강화제
비타민B6염산염	Vit. B6염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C	Vit. C	영양강화제
비타민D2	Vit. D2	영양강화제
비타민D3	Vit. D3	영양강화제
비타민E	Vit. E	영양강화제
비타민K1	Vit. K1	영양강화제
빙초산		산도조절제
DL-사과산	사과산	산도조절제, 팽창제
DL-사과산나트륨	사과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산성알루미늄인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Na, 피로인산일나트륨, 피로인산일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산화마그네슘	산화Mg	영양강화제
산화아연	산화Zn	영양강화제
산화칼슘	산화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석유왁스		피막제, 껌기초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L-세린	세린	영양강화제
세스퀴탄산나트륨	세스퀴탄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셀룰라아제		효소제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에스테르	유화제 겔기조제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수산화알루미늄		산도조절제
수산화칼슘	수산화Ca, 소석회	산도조절제
셀락		피막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스테아린산Mg	영양강화제, 유화제
스테아린산칼슘	스테아린산Ca	영양강화제, 유화제
스테아릴젯산나트륨	스테아릴젯산Na	유화제
스테아릴젯산칼슘	스테아릴젯산Ca	유화제
L-시스테인염산염	시스테인염산염	영양강화제
L-시스틴	시스틴	영양강화제
5'-시티딜산	시티딜산, CMP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5'-시티딜산이나트륨	5'-시티딜산나트륨, 5'-시티딜산Na, 시티딜산이나트륨, 시티딜산이Na, 시티딜산나트륨, 시티딜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쌀겨왁스		피막제
5'-아데닐산	아데닐산, AMP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아디핀산		산도조절제, 팽창제
L-아르기닌	아르기닌	영양강화제
α -아밀라아제(비세균성)	아밀라아제	효소제
α -아밀라아제(세균성)	아밀라아제	효소제
아셀렌산나트륨	아셀렌산Na	영양강화제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빈산Na, 비타민C-Na	영양강화제
아스코르빈산칼슘	아스코르빈산Ca, 비타민C-Ca	영양강화제
아스파라기나아제		효소제
L-아스파라긴	아스파라긴	영양강화제
L-아스파르트산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긴산	영양강화제
알긴산		유화제
DL-알라닌		영양강화제
L-알라닌		영양강화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갈락토시다아제	효소제
에리스리톨		향미증진제
에스테르겔		겔기조제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Na	산도조절제, 유화제
염화마그네슘	염화Mg	두부응고제, 영양강화제
염화망간	염화Mn	영양강화제
염화알루미늄		팽창제
염화제이철	염화철, 염화Fe	영양강화제
염화칼슘	염화Ca	두부응고제
염화콜린		영양강화제
염화크롬	염화Cr	영양강화제
엽산		영양강화제
올레오레진캄시킴		향미증진제
올레인산나트륨	올레인산Na	피막제
요오드칼륨	요오드K	영양강화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용성비타민P		영양강화제
5'-우리딜산이나트륨	5'-우리딜산나트륨, 5'-우리딜산Na, 우리딜산이나트륨, 우리딜산이Na, 우리딜산나트륨, 우리딜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우유응고효소		효소제
유동파라핀		피막제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유성비타민A에스테르, 비타민A에스테르	영양강화제
유카추출물		유화제
이노시톨		영양강화제
5'-이노신산이나트륨	5'-이노신산나트륨, 5'-이노신산Na, 이노신산이나트륨, 이노신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이리단백		영양강화제
L-이소로이신	이소로이신	영양강화제
이초산나트륨	이초산Na	산도조절제
이타콘산		산도조절제
인베르타아제		효소제
인산		산도조절제
인산철	인산Fe	영양강화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자당에스테르	유화제 겔기조제
전해철		영양강화제
젯산		산도조절제
젯산나트륨	젯산Na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유화제
L-젯산마그네슘	L-젯산Mg, 젯산마그네슘, 젯산Mg	산도조절제
젯산철	젯산Fe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젯산칼륨	젯산K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젯산칼슘	젯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제삼인산나트륨	제삼인산Na, 인산삼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삼인산마그네슘	제삼인산Mg, 인산삼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삼인산칼륨	제삼인산K, 인산삼K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삼인산칼슘	제삼인산Ca, 인산삼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이인산나트륨	제이이산Na, 인산이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이인산마그네슘	제이인산Mg, 인산이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이인산알루미늄	제이인산Al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이인산칼륨	제이인산K, 인산이K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이인산칼슘	제이이산Ca, 인산이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일인산나트륨	제일인산Na, 인산일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일인산알루미늄	인산일Al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K, 인산일K, 산성인산칼륨, 산성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일인산칼슘	제일인산Ca, 인산일Ca, 산성인산칼슘, 산성인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젤라틴		유화제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두부응고제
DL-주석산		산도조절제
L-주석산		산도조절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DL-주석산나트륨	DL-주석산Na	산도조절제
L-주석산나트륨	L-주석산Na	산도조절제
DL-주석산수소칼륨	DL-주석산수소K, DL-중주석산칼륨, DL-중주석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L-주석산수소칼륨	L-주석산수소K, L-중주석산칼륨, L-중주석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주석산수소콜린	중주석산콜린	영양강화제
주석산칼륨나트륨	주석산K · Na	산도조절제
천연검		검기초제
초산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초산나트륨	초산Na	산도조절제
초산비닐수지		검기초제, 피막제
초산칼슘	초산Ca	산도조절제
카나우바왁스		피막제
카라기난		유화제
L-카르니틴	카르니틴	영양강화제
카제인		유화제
카제인나트륨	카제인Na	유화제
카탈라아제		효소제
칸델릴라왁스		유화제, 피막제
퀼라아추출물		유화제
키토사나아제		효소제
타우린		영양강화제
탄나아제		효소제
탄닌산		향미증진제
탄산나트륨	탄산Na, 소오다회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마그네슘	탄산Mg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Na, 중탄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수소암모늄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수소칼륨	탄산수소K, 중탄산칼륨, 중탄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암모늄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칼륨(무수)	탄산칼륨, 탄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칼슘	탄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테아닌		검기초제
테아닌		영양강화제
탤크		검기초제
d- α -토코페롤	토코페롤	영양강화제
d-토코페롤(혼합형)	토코페롤(혼합형)	영양강화제
dI- α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초산토코페롤, 초산비타민E, 초산Vit. E	영양강화제
d- α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초산토코페롤, 초산비타민E, 초산Vit. E	영양강화제
d- α -토코페릴호박산	호박산토코페롤, 호박산비타민E, 호박산Vit. E	영양강화제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효소제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효소제
DL-트레오닌		영양강화제
L-트레오닌		영양강화제
트리아세틴		유화제
트립신		검기초제
트립신		효소제
DL-트립토판		영양강화제
L-트립토판		영양강화제
L-티로신	티로신	영양강화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판크레아틴		효소제
판토텐산나트륨	판토텐산Na	영양강화제
판토텐산칼슘	판토텐산Ca	영양강화제
DL-페닐알라닌		영양강화제
L-페닐알라닌		영양강화제
펙티나아제		효소제
펙틴		유화제
펄신		효소제
포스포리파아제 A2		효소제
폴리부텐		검기초제
폴리비닐피롤리돈		피막제
폴리소르베이트20		유화제
폴리소르베이트60		유화제
폴리소르베이트65		유화제
폴리소르베이트80		유화제
폴리이소부틸렌		검기초제
폴리인산나트륨	폴리인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폴리인산칼륨	폴리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푸마르산		산도조절제
푸마르산일나트륨	푸마르산나트륨, 푸마르산Na	산도조절제
푸마르산제일철	푸마르산철, 푸마르산Fe	영양강화제
플루라나아제		효소제
플루란		피막제
프로테아제(곰팡이성: HUT)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테아제(곰팡이성: SAP)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테아제(세균성)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테아제(식물성)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필렌글리콜		유화제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유화제
L-프롤린	프롤린	영양강화제
피로인산나트륨	피로인산Na, 피로인산사Na	산도조절제, 팽창제
피로인산제일철	피로인산철, 피로인산Fe	영양강화제
피로인산철나트륨	피로인산철Na, 피로인산Fe · Na	영양강화제
피로인산칼륨	피로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피마자유		피막제
피틴산		산도조절제
향신료 울레오레진류		향미증진제
헤미셀룰라아제		효소제
헤스페리딘		영양강화제
헴철		영양강화제
호박산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호박산이나트륨	호박산나트륨, 호박산Na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환원철		영양강화제
황산나트륨	황산Na	산도조절제
황산동	황산Cu	영양강화제
황산마그네슘	황산Mg	영양강화제
황산망간	황산Mn	영양강화제
황산아연	황산Zn	영양강화제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팽창제
황산알루미늄칼륨	황산알루미늄K, 황산시 · K, 칼륨명반	산도조절제, 팽창제
황산암모늄		팽창제
황산제일철	황산철, 황산Fe	영양강화제
황산칼륨	황산K	산도조절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황산칼슘	황산Ca	두부응고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효모		팽창제, 향미증진제
효모추출물		향미증진제
효소분해레시틴		유화제
효소처리루틴		영양강화제
효소처리헤스페리딘		영양강화제
L-히스티딘	히스티딘	영양강화제
L-히스티딘염산염	히스티딘염산염	영양강화제
G4 생성효소		효소제

1. 보고인: 담당자 또는 대리인
2. 영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상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영업등록번호
3. 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 살균 탁·약주의 경우, 살균탁주 또는 살균약주로 기입
4. 제품명: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 원료, 제조공정, 포장방법 등에 따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명칭
5.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탁주·약주·맥주)
 - 맥주는 품질유지기한 가능(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6.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원재료: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
 - 성분: 제품에 첨가한 (비)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
 - 배합비율: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만 해당 (실제 사용한 원료(물 포함) 함량을 계산하여 기재)
9. 용도 용법: 제품의 사용 목적 및 방법 기재
10.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기재
 - 보관방법(예시): 냉장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 포장재질(예시): PET, 폴리에틸렌, 유리 등
11.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방법 기재 및 그 포장 단위
 - 포장방법(예시): 레토르트 파우치, 캔 주입, 병 주입, 살균, 멸균 주입 등
 - 포장단위(예시): 350ml, 500ml, 1L
(동일제품(원료, 제조공정, 품질이 같은 경우)은 한 품목에 모든 용량을 기재)
12. 성상: 육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제품 고유의 특징
 - 예시) 무색 투명한 인삼향의 맑고 점질성 없는 액체, 미황색의 누룩냄새가 나는 액상 제품
13. 고열량·저영양/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해당없음
14. 기타 : 에탄올 함량 등 기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부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	
	용도 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해당 없음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출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용 서식]

■ 제조방법설명서(안)

업체명			
제품명		유형	

<제조방법>

↓	
↓	
↓	
↓	

기재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식품공전의 식품별 제조·가공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 2이상 유형의 공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공정을 거쳐 생산된 원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한다. - 가열, 살균, 멸균공정의 경우 온도, 시간 등 조건을 반드시 기재한다. - 추출공정은 추출용매를 반드시 기재한다. - 효소처리 공정은 반드시 사용한 효소의 종류를 기재한다. - 발효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공정단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분해·중화·제거되어야 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공정단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

본 책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은 자료를 작성할 당시의 법령과 규정에 기초하였으므로 기술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종별 표시 예시

-
- 발 행 일 : 2016년 12월
 - 발 행 인 : 손 문 기
 - 편집위원장 : 윤 형 주
 - 편 집 위 원 : 박희옥, 김성근, 김진영, 이상호, 유선영,
김윤정, 노혜림, 정영훈, 박선영, 김보람
 - 발 행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wavy lines, resembling a scalloped or scalloped edge, arranged in a vertical column. These lines are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